

## 診斷書 作成上의 注意 義務

민사재판에서의 교통사고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해의 결과에 대해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까지를 의사가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의사의 진단서외에 다시 의사의 감정서를 필요로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폭행사건에는 의례히 의사의 진단서가 증거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그 진단서에 적혀 있는 향후 치료기간이 바로 사건처리의 기준이 되고 또 형량과 형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니만큼 만일 의사가 정실 또는 자칫 잘못생각해서 진단서를 잘못썼다고 생각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다스리려 들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실무가들은 의사의 경우와는 좀 달라서 그 진단서에 표시된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자칫하면 그것이 트집이 되어 형사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된 의사는 허위진단서 작성사건의 그 대개가 오진(誤診)의 경우에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 오진사건에 관해 1976. 2. 10(75도1888호 사건)대법원은 그 죄의 성립관계에 관해서 설명한 선을 그어 주었다.

그 사건은 R씨 형제가 그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의사M씨가 K씨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자기들이 K씨를 구타했다는 죄로 벌금형을 받게 했다는 원한을 품고 그 R형제는 일을 꾸미기를 동생인 R씨의 배안에 흑생모반이 있음을 이용하여 의사M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아 내어 보복

을 하기로 약속한 후 그 배에 있는 선천적인 흑색모반을 마치 운동선수에게 맞은 상처로 가장하고 중환자 행세를 하여 M의사경영의 병원에 부축을 받고 들어가 진찰을 받을 때 알콜로 환부를 닦자 아프다는 시늉으로 그럴듯이 속이면서 사흘전에 운동선수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호소한 것이 주효하여 뜻하는대로 상해진단서를 받아냈다. 그때 의사M씨는 그 호소를 그대로 믿고 체온도 재보니 열이 좀 있었고 알콜로 환부라고 지적하는 곳을 닦아 보았으나 멍든자국처럼 보였으며 알콜이 닿으면 냅시 엄살을 부려 진짜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말하기를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 내용이 진실아닌 기재를 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 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했다. 이 판결은 오진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말할 여지가 없다고 함을 밝힌 사안이므로 이 판결로 인해 誤診에 의한 진단서에 대해 함부로 의사를 처벌코져 하는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사건의 경우와 같이 의사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일부러 환자가 自傷을 한 후 의사를 적극적으로 속여 상해진단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 그 의사는 허위진단서

를 발행한다는 犯意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한 바 있다. (1975年 1月 14日 선고)

그런데 또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말썽이 되어 그 작성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많은 애를 썼던 사건이 있다. 즉 지방의 어떤 개업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된 사안인데 「治療完了」라고 쓰여진 진단서상의 글자 낙자를 놓고 검찰측은 이것을 「完治」라는 뜻이라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그 개업의사를 기소했다. 여기서 그 글자의 해석을 놓고 피고인측과 논쟁이 벌어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까지 상고되었다가 기소된지 3년만인 1977년 11, 12에야 결말이 났던 사건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소장파열이 되고 복막염이 병발되어 그 피해자는 입원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의사는 개복수술전에 치료 3주일(21일이 됨)을 요하는 상처가 생겼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1974. 10. 17 수술을 끝내고 치료를 했다. 그 후 수술결과는 매우 좋아졌고 시간이 흘러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만히 화해를 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같이 그 의사를 찾아가 진단서의 재발급을 요청했다. 이때 그 의사는 「10月 17日 개복수술하여 10月 27日 治療完了되어 退院하였음」이라고 써 넣은 진단서를 발급했다. 다시 말하면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나서 완치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10일만에 완치된듯이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했다하여 기소가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촛점은 「治療完了」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이냐로 좁혀졌다. 검찰측은 하나의 환자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진단서를 각각 발급했다고 해서 분노했다. 검사는 그 「治療完了 되어」의 허위를 이유로 그 의사를 기소했고 1심법원은 그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 후 항소심인 光州地方法院 항소부는 그 의사에 대해 無罪를 선고했다. 그 까닭인즉 「치료완료」란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없게 되었다는

뜻이고 「완치」는 외상이전의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어 건전한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활동이 가능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진단서 기재내용과 같이 환자가 퇴원후에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쓸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들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이를推覆었다. 즉 그 판결에 의하면 「完治」란 말과 「治療完了」란 말은 뜻이 다른데 완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치료가 완료되었으니 그대로 표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는 뜻의 판결을 했다. 검사는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 검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함으로서 그 의사는 무죄인것으로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상고기각의 이유는 항소심의 경우와 전해를 달리했다. 즉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일반적으로는 완치와 치료완료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같이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犯意를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설사 그 두 가지 어귀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런 뜻으로 썼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그 의사는 의사로서 진단서에 흔히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아 그 뜻이 불분명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그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치우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쓴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되었던 진단서에 애매한 표현을 써서 그 의사는 한 때 큰 화를 입었던 것이다.